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거 창 군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	2014 ~
----------	--------

제출연월일	2014. 10. .
제 출 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안이유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연 황

- 시 설 명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규 모 : 연면적 1,345㎡ (지상2층)
 - 1층(1,054㎡) : 입하장, 냉장·냉동 창고, 소포장실, 출하장 등
 - 2층(291㎡) : 사무실, 회의실, 식당, 탈의실 등

나. 위탁사무

- 시 설 : 학교급식지원센터 1, 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 영 : 38개교(10,000명)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

다. 그간의 추진사항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도 지원사업 선정 : 2010. 1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1. 10. 4
-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 2011. 11. 2
-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동의(안) 가결 : 2012. 4

-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선정 : 2012. 4(거창원협)
- 23개교(4,025명) 식자재 조달대행(초등) : 2012. 5 ~ 2012. 8
- 36개교 식자재 조달대행(중·고등 추가) : 2012. 9 ~ 2013. 2
- 38개교(10,000명) 식자재 조달대행(유치원 추가) : 2013. 1~

라. 운영계획

- 재 위탁 운영
 - 수탁기관 :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대표 윤수현)
 - 위탁기간 :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 ※ 단 2016년 이후 수탁업체는 2015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
- 위탁운영 방식
 - 공급품목의 가격, 생산 공급업체 선정, 이익금의 분배조건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협약서 작성 및 공증)
 -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대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실무일체 위탁

마. 소요예산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나. 양우계획

-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 2014년 11월
- 위탁운영 시설장비 점검 : 2014년 12월
- 위탁 운영 실시 : 2015. 01. 01 ~ 2015. 12. 31.

다.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위탁운영 계획

- 기 수탁기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기간이 2012. 04. 16 ~ 2014. 12. 31.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 2014. 09. 30.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1년 재위탁으로 결정되어 기 수탁기관(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재위탁 운영계획입니다

I. 법적근거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II. 시설개요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건축규모 : 지상2층 (건축면적 : 1,119㎡ / 연면적 : 1,345㎡)
- 공간구성

시설내역	면적 (㎡)	내 용	비 고
입·출하장	246	급식 식재료의 입하와 출하되는 공간	
저장시설 3동	267	예냉창고, 저온창고, 냉동창고 각 1동	
위 생 실	56	소분소포장 인원 및 내방 출입 인원에 대한 소독, 청결 구간	
부 대 시 설	776	사무실, 주방 및 운영기계장비 등	
계	1,345		

III. 위탁추진 계획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일 시 : 2014. 9. 30(화)14:00~

○ 심의결과 : 재위탁(1년간)

- 수탁업체 :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윤수현)

- 수탁업무 : 식자재 조달대행 등 학교급식센터 시설 및 장비 운영

- 수탁기간 : 2015. 1. 1 ~ 2015. 12. 31(1년간)

※ 단 2016년 이후 수탁업체는 2015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

위탁범위

○ 시 설 : 학교급식지원센터 1, 2층 건물, 장비 유지관리

○ 운 영 : 관내 38개 전 학교 식자재 조달대행 업무

선정기준

○ 학교급식에 대한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

○ 관내 농산물 사용량 확대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 2014. 11

○ 시설 및 장비점검 : 2014. 12

○ 위탁운영 : 2015. 01. 01.~ 12. 31.

IV. 소요예산

해당없음

V. 기대효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안정화로 원활한 식자재 조달대행업무 추진

맞춤형 마을기업 생산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 계 법 령(요약)

□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6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시행일 : 2011.10.04)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
3.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의 협약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2.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락처: 055-940-317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6.12)